

내 용 증 명

발신인 강 봉 수(700918-1079534)
평택시 신촌1로 9, 108동 1601호
(철원동, 평택지제역동문굿모닝힐맘시티1단지)
전화: 010-6767-3716

이 우편물은 2020-08-25
제 3430303031554호에 의하여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수원지법평택지원우체국장

대한민국 KOREA

수신인 골드종합건설 주식회사(180111-0455089)
본점: 부산 수영구 광안해변로 423-1, 3층(민락동)
✓ 받는 곳 : 부산 부산진구 범천로 12번길 13, 11층 1101호(범천동)
골든팰리스더리치 분양사무실
전화: 051-3315-5343

1. 귀사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2. 골든팰리스분양대행사 이진인본부장(이하 이진인)이 보낸 내용증명 중 일부 사실과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정하며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3. '3번항의 본인의 의지로 정식계약을 체결하였다'와 관련입니다. 저는 이 계약서가 단순히 동.호수를 지정하기 위한 가계약금을 거는데 필요한 가계약서인줄 알았습니다. 일단 50만원만 걸어놓고 시간을 두고 찬찬히 둘러보고 신중히 생각한 다음 계약 여부를 결정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50만원만 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진인이 계속 100만원을 걸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최소 100만원을 걸어줘야 자기가 시행사대표에게 할말이 생긴다며 수차례 요구했습니다. 저는 결국 요구에 이기지 못해 마지못해 100만원을 입금했습니다. 제가 당 계약서는 정식계약이 아니라 가계약이라 생각했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계약당시 매도인 골든종합건설(주)에 대한 그 어떠한 서류도 없었다는 점(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 법인대표신분증사본, 대리인신분증사본, 통장사본, 건축물대장 등)
둘째. 계약당시 공동소유자 8명의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본인발급), 소유자본인도장이 찍힌 위임장등이 전혀 없어 매도인이 백정웅인지 골든종합건설(주)인지 불분명하다는 점.

셋째. 매도인란에 공동소유자 8명의 인감도장이 전부 찍혀야함에도 지분이 제일작은 골드종합건설(주) 한 개만이 표시되어있는 점. 그나마도 법인인감도장이 아닌 이진인의 싸인이 되어있다는 점.

넷째. 입금계좌 또한 매도인란의 법인명과 동일명의 계좌가 아닌 백정웅씨의 개인계좌로 입금하라고 하는 점.(실제 가계약금 일백만원을 백정웅씨 계좌로 입금했습니다)

4. 4번항과 관련하여 '호실변경을 요청했다' 는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실변경은 제가 요청한 것이 아니고 이진인이 먼저 저에게 제안한 것입니다. 저는 일관되게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이진인이 먼저 자금이 불안하면 전매형태로 갈 것을 제안하였고 그럴려면 먼저 호실변경을 해야 한다고 하여 제가 수용한 것입니다. 전매라는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제가 어떻게 먼저 요청할수 있겠습니까.

(녹취록있습니다. 2020.08.10. 녹취록중 2분 57초~ 4분 09초까지 관련녹취록입니다)

5. '임차인 유치를 희망하였다' 라는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역시 제가 희망한 것이 아니라 이진인이 먼저 저에게 자금이 불안하면 올전세로 해라고 제안하였고 임차인을 자기들이 구해서 전세금2억을 받게해 주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녹취록있습니다. 2020.08.10. 녹취록중 19분 50초~ 20분 20초까지 관련녹취록입니다)

6. 또한 이진인과 주경진차장에게 상기이유로 계약을 못하겠다고 전화통화를 했고 임차인에게는 임차인으로부터 받은 백만원에 백만원을 더하여 총 200만원을 임차인에게 입금하였습니다.(첨부서류: 이체 확인증)

7. 본인은 위에서 본 사유에 근거하여 본 가계약을 해지해주실 것을 요구하며 본인이 지불했던 가계약금 100만원은 본인의 계좌(새마을금고 1329-10-011268-0)로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

발신인 강 봉 수



이체 확인증 [거래 참고용]

처리일시	2020년 08월 14일 16:51:23
------	------------------------

출금/입금내역

출금계좌번호	105601-04-106***
입금계좌번호 / 위탁계좌	569202-01-263316
입금은행 / 증권사	국민은행
수취인	김영선
이체금액	2,000,000 원
수수료	0
입금통장표시내용	강봉수
출금통장표시내용	임차인배상
타행처리번호	



위의 내용이 정상적으로 거래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이체 확인증은 고객 편의를 위하여 제공되는 것으로 거래 참고용으로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본 확인증 내용을 임의로 위·변조하여 행사할 경우 형법(제231조 및 제234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2020/08/24